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숙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1년 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6월 1일

3. 제안사유

○ 노인인구 증가(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)와 노인 고독사(무연고사) 및 노인 자살률 증가 등에 따른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커뮤니티케어(community care ; 지역사회통합 돌봄)¹⁾에 대한 관심 및 정책 추진 확대됨.

○ 코로나19 감염자 중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의 사망률이 일반인의 10배 이상에 이르고 있어 노인 돌봄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,
- 특히, 집단감염의 우려에 따른 사회적(or 생활 속) 거리두기 실천으로 시설 돌봄보다 재가 돌봄의 필요성이 확대됨.

○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기존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·지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따라 1987년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에서 시작해 현재 충청북도에 19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위탁 운영 중임.

1) 지역사회 통합 돌봄(커뮤니티케어): 케어가 필요한 주민(노인, 장애인 등)이 살던 곳(자기 집, 그룹홈 등)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·보건의료·요양·돌봄·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뜻하며, 보건복지부에서는 2026년 서비스의 보편화를 목표로 2019년부터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 및 핵심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-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의 사업 및 운영 지원과 관련해,
 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²⁾에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보건 및 복지증진 책임과 이를 위한 시책 강구·추진을 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제47조³⁾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 - 또한,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 사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 라목에 따른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.
- 이에, 경제적·정신적·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의 재가노인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복지 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나.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다.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라.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평가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가. 제출배경

- 노인 돌봄의 문제는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사회적 문제로, 과거에는 개인의 부담 및 시설중심의 대응으로 이루어졌지만, 이제는

2)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3)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지속적으로 지역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대두됨.

-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책으로써 재가노인에 대한 대비책은 향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재가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시스템화 하여, 노인 개개인이 정든 자신의 거주지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노인들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.
- 현재 경기, 전북, 전남, 경남 등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광역도 차원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·시행 중에 있음.
- 본 조례안은 도내 노인 인구 증가 및 중앙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책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는 “재가노인” 과 “재가노인지원서비스” 에 대해 정의함.
 - “재가노인” 의 용어 정의는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연령 기준 및 같은 법의 재가노인 규정을 준용하되, 지역 범위를 추가한 것으로 타당함.
 - “재가노인지원서비스” 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호에 따르고 있는바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제26조의2(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)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“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”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12.>

1. 재가노인지원서비스: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,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

○ **안 제4조**는 재가노인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
○ **안 제5조**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에 대한 규정으로,

- 본 조례안에 따른 이용대상은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7조제1항마목에 따라,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및 방문요양서비스, 주·야간보호서비스, 단기보호서비스, 방문목욕서비스, 방문간호서비스 이외의 상담·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, 장기요양, 노인돌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서비스 이용 대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또한, 제2항에서는 이용대상자 중 우선대상자를 규정하여, 서비스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음.
- 우선대상자 중 ‘기준 중위소득 160%이하’ 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 및 고령 부부 노인가구에 지원하는 단기가사서비스 등의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‘기준 중위소득 160%이하’ 로 정하고 있는 것에 맞춘 것으로 판단됨.

※ 관련 조례를 기 제정한 전남, 경남도 ‘기준 중위소득 160%이하’ 적용

- ②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상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.
1.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) 160% 이하의 재가노인
 2. 경도인지장애,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,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
 3. 우울,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재가노인
 4.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(장기요양, 맞춤형돌봄, 치매안심센터 등을 포함한다) 이용자 중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재가노인
 5. 긴급지원이 필요한 재가노인
 6.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가노인

○ **안 제6조**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으로 크게 직접서비스, 간접서비스, 긴급서비스,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.

1. 직접서비스 : 일상생활지원, 정서지원, 주거환경개선지원, 여가활동지원, 사례관리, 상담지원, 가사간병지원, 지역사회자원개발, 치매예방프로그램지원, 조손가정지원 등
2. 간접서비스 : 연계지원, 교육지원, 이동지원,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, 노인인식개선사업
3. 긴급서비스 : 위기지원서비스, 응급호출서비스 등
4.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본 서비스 사업들은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6조의2(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‘2021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(보건복지부)’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판단되며, 또한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- 안 제8조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·군,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및 시설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 -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근본인 문제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부재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중복 및 파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치 노력이 요구됨.

다. 종합 검토 의견

-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재가노인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여러 서비스 중 하나로 현재 충북도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19개소가 운영 중임.
 - ※ 충북도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(19): 청주(7), 제천(3), 나머지 9개 시·군(각 1)
-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 및 중앙정부의 재가 중심 지원 정책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해 법

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 입법취지 및 필요성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, 법적으로도 타당함. 또한 조례안 예고 및 충청북도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들,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한 것으로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

- 다만, 향후 사회복지 전반의 흐름인 커뮤니티케어를 반영하고,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재가노인통합서비스를 반영한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정책방향 및 전달체계 개편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추후 개정사항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.